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2023.12.7.(목)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2. 4.

복지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2023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 예산안 총괄

상정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등 반영과 기편성된 예산의 삭감, 집행잔액의 반납 등 세출구조 조정을 통하여 편성된 추경(안)임.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121억 324만원에 비하여

435억 6,888만 4천원이 증가된 **2조 4,556억 7,212만 4천원임.**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5억 4,511만 7천원이 증가된 **2조 976억 3,096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 2,376만 7천원이 증가된 **3,580억 4,115만 7천원**임.

회계별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률 (%)
총 계	2,455,672,124	100.00	2,412,103,240	100.00	43,568,884	1.81
일반회계	2,097,630,967	85.42	2,065,085,850	85.61	32,545,117	1.58
특별회계	358,041,157	14.58	347,017,390	14.39	11,023,767	3.18
공기업특별회계	203,529,007	8.29	200,797,493	8.32	2,731,514	1.36
기타특별회계	154,512,150	6.29	146,219,897	6.06	8,292,253	5.67

□ 세입재원

○ **일반회계** : 총 **325억 4,511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임.

- 지방세수입 37억 4,800만원,
- 세외수입 110억 5,175만 2천원,
- 지방교부세 2천만원,
- 조정교부금등 54억 5,266만 4천원
- 보조금 113억 9,603 1천원 등

○ **특별회계** : **총 110억 2,376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임

- 세외수입 : 143억 398만 3천원
- 보조금 : △10억 3,749만 8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억 4,271만 8천원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

복지환경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56.88%인 **1조 3,968억 1,101만 4천원** 규모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3155억 2,673만 5천원에서 1.46%인 191억 7,786만 7천원이 증가한 **1조 3,347억 460만 2천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3.62%에 해당함.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41억 2,790만원에서 3.15%인 20억 2,149만 7천원이 감소한

621억 641만 2천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17.35%에 해당함.

□ 복지환경위원회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

○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9,045억 2,189만 4천원보다 1.48% 증가한 **9,179억 5,320만 3천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37억 7,597만 7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1억 4,409만 2천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에 19억 3,102만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16억 8,125만 7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16억 8,125만 7천원 등 증액편성 하였음

○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484억 23만 9천원보다 0.57% 증가한 **1,492억 5,325만 6천원**으로,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 설치 19억원, 수동면 송천리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9억 7,800만원 등 증액편성 하였음.

○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125억 8,900만 8천원보다 1.23% 증가한 **2,151억 9,951만 8천원**으로,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사업 9억 2,121만 5천원 등 증액편성 하였음.

○ 다음은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60억 4,864만 6천원보다 6.95% 증가한 **385억 5,536만 4천**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22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잔액 14억 7,981만 9천원 등 편성하였음.

○ 다음은 **남양주 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39억 6,694만 8천원보다 1.60% 감소한 **137억 4,3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7,370만원이 감소한 71억 9,4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3,679만 7천원이 감소한 330억 6,7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1,100만원이 감소한 215억 1,5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금 조 성 규 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수입	지출		
합 계	87,660,819	126,049,964	1,050,434	212,660,349	124,999,53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825,208	105,273,548	761,424	146,337,332	104,512,124
신청사건립기금	45,225,140	20,442,296	0	65,667,436	20,442,296
식품진흥기금	610,471	334,120	289,010	655,581	45,110

□ 검토 의견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세출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 심사 방향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